

우체국 행복지킴이통장 특약

제1조 【적용범위】

법령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수급금 등에 대한 압류를 방지하기 위한 ‘우체국 행복지킴이통장’(이하 ‘이 예금’이라 한다)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,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‘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’, ‘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약관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2조 【예금종류】

이 예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다.

제3조 【가입대상】

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실명의 개인으로 한다.

- ①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서 정하는 기초생활 수급자
- ② 「기초연금법」에서 정하는 기초(노령)연금 수급자
- ③ 「장애인연금법」에서 정하는 장애인연금 수급자
- ④ 「장애인복지법」에서 정하는 장애수당, 장애아동수당 수급자
- ⑤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지원 보호대상자
- ⑥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서 정하는 요양비 등 보험급여 수급자
- ⑦ 「긴급복지지원법」에서 정하는 긴급지원 대상자
- ⑧ 「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」에서 정하는 어선원보험의 보험급여 지급대상자
- ⑨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서 정하는 특별현금급여비 수급자
- ⑩ 「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수급자
- ⑪ 「아동수당법」에서 정하는 아동수당, 영아수당 수급자
- ⑫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에서 정하는 소기업·소상공인 공제금 수급자
- ⑬ 「아동복지법」에서 정하는 자립수당 수급자
- ⑭ 「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금액 수급자
- ⑮ 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」에서 정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금 수급자
- ⑯ 「의료급여법」에서 정하는 의료급여 수급자
- ⑰ 「아동복지법」에서 정하는 자립정착금 수급자
- ⑱ 「영유아보육법」에서 정하는 양육수당 수급자
- ⑲ 「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는 구직촉진수당 등 수급자
- ⑳ 「고용보험법」에서 정하는 실업급여 수급자

- ㉑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에서 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 수급자
- ㉒ 「임금채권보장법」에서 정하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수급자
- ㉓ 「장애인복지법」에서 정하는 저소득장애인 진단서발급비 및 검사비 수급자
- ㉔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에서 정하는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수급자
- ㉕ 「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」에서 정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금 수급자
- ㉖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에서 정하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금 수급자
- ㉗ 「선원법」에서 정하는 선원 유기구제비용 등 수급자

제4조 【가입 및 해지】

- ① 이 예금의 가입은 우체국 창구를 통하여 한다.
- ② 이 예금의 해지는 우체국 창구, 인터넷뱅킹, 스마트뱅킹 등을 통하여 한다.

제5조 【가입기간】

이 예금의 가입기간은 제한이 없다.

제6조 【가입금액】

이 예금의 가입금액은 0원이며 잔액은 제한이 없다.

제7조 【입금제한】

이 예금으로의 입금은 법령에 따라 제 3조의 가입대상에게 지급되는 압류금지 수급금 등에 한하며, 그 이외는 입금할 수 없다.

제8조 【거래제한】

- ① 이 예금은 관련 법에 따라 입금된 예금과 이에 관한 채권이 압류되지 않고, 압류에 의한 지급제한이 되지 않는다.
- ② 이 예금은 계좌대월 약정, 전자통장 약정, 양도, 질권설정, 담보제공, 상계, 지급정지가 불가하다.
- ③ 이 예금은 인터넷, 스마트뱅킹 가입상품 등의 모계좌로 사용할 수 없다.
- ④ 이 예금을 신용카드 결제계좌나 공과금 등 대금납부 목적의 계좌로 지정한 경우, 결제·납부금액이 부족하거나 결제·납부 취소 등이 발생한 때에는 이 예금의 입금제한에 따라 고객이 우체국 창구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별도 지정계좌로 입금 또는 직접 수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.

제9조 【적용이율】

- ① 기본이율은 신규 가입일 현재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(www.epostbank.go.kr)

등에 게시된 이율을 적용하되, 이율이 변동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일자를 기준으로 변동된 이율을 적용한다.

- ② 우대이율은 결산기간 중 평균잔액이 10만원이상일 경우에는 연 0.5%p 우대 이율을 적용한다.
- ③ 이 예금의 이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, 이율을 바꾼 때에는 그 바뀐 내용을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(www.epostbank.kr)에 1개월 동안 게시한다.

제10조 【이자계산】

- ① 정기이자계산 기준일(결산일)은 매년 3, 6, 9월 셋째 토요일이며 12월은 말일로 한다.
- ② 이자 계산기간(결산기간)은 최초 예금일부터 지급일 전일까지(또는 지급일 부터 차기 지급일 전일까지)로 하고 이자계산은 매일의 최종 잔액을 평균 하여 고시된 해당 이율로 셈한다.

제11조 【이자지급방식】

이 예금의 이자는 정기이자계산 기준일 다음날(지급일)에 통장으로 입금된다.

제12조 【우대서비스】

- ① 이 예금은 아래의 우대서비스를 제공한다.
 - 1.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: 인터넷 · 폰 · 모바일뱅킹 타행이체, 전화번호이체 수수료 면제 (단, 납부자 자동이체(타행) 수수료는 제외)
 - 2. 자동화기기 수수료 면제 : 우체국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영업시간 외 출금, 우체국간 계좌이체 · CMS · 가상계좌이체 수수료 면제
 - 3. 통장 또는 인감 분실 재발행 수수료 면제
- ② 이 예금의 우대서비스는 변경될 수 있으며, 시행일 1개월 전에 우체국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(www.epostbank.go.kr)에 게시한다.

제13조 【과세구분】

이 예금은 일반과세로 가입 가능하다.

부 칙

이 특약은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.